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935
----------	------

2025년 9월 5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이숙자 의원(찬성자 25명)
나. 발 의 일 : 2025년 8월 11일
다. 회 부 일 : 2025년 8월 14일
라. 상 정 일 :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9월 2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숙자 의원)

가. 제안이유

- 「병역법」 제82조의3에 병역명문가의 선정 요건 및 절차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조례의 병역명문가 정의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 또한 예우대상자 요건 중 ‘병역명문가증 발급’ 조건을 삭제하고, 법령에 따라 선정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자를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병역명문가의 정의를 「병역법」 제8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선정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가문으로 정비함(안 제2조제1호).
- 2) 예우대상자 요건에서 '병역명문가증 발급' 요건을 삭제하고,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사람 중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함(안 제2조 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병역법」,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나. 예산조치 : 비대상(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다. 입법예고(2025. 8. 20. ~ 8. 24.)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김 태 한)

- 본 개정조례안은 병무청 훈령*에 근거하여 시행되어 온 병역명문가 선정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원과 혜택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의 「병역법」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안 제2조제1호)하고, “예우대상자” 정의를 간명하게 정비(안 제2조제2호)하려는 것임.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 병역명문가 선정 및 취소·제외, 포상 및 예우, 지자체 협조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그 외 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 규정하였음.

< 관련 「병역법」 개정(신설) 조문 >

- 법률 제19791호, 2023. 10. 31., 일부 개정, 2024. 5. 1. 시행 -

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 ① 병무청장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가문에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에서 제외하며, 이미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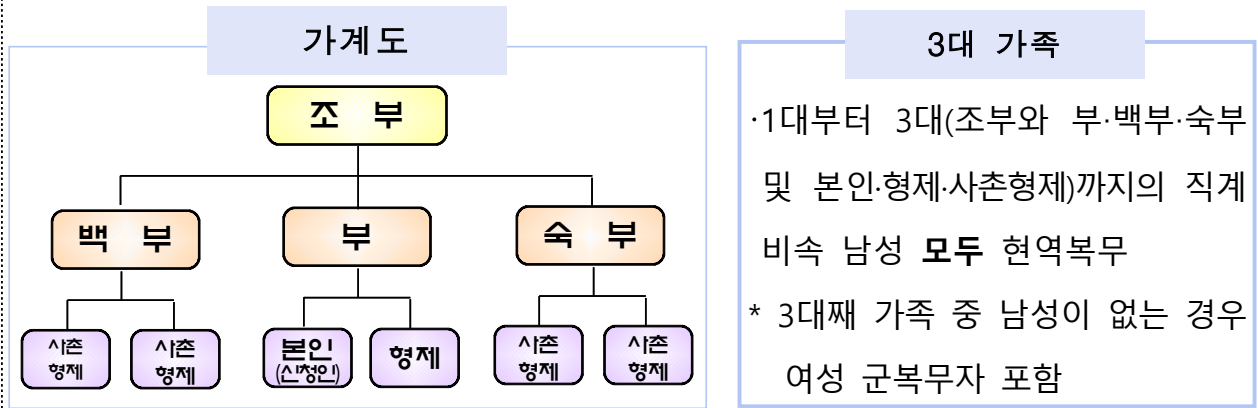
제82조의4(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병무청에서는 「병역법」 제82조의3에 따라 병역명문가를 선정·관리하고 있으며, 제82조의4제1항에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제24조)하고 있음.

< 병역명문가 개요 >

○ 병역명문가 :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



< 병역명문가 선정 절차(병무청) >

신청·접수	선 정	선양 행사
· 오프라인(방문, 우편 등) · 온라인(병무청 홈페이지) (매월, 지방병무청)	· 확인·선정(20일까지) · 결과 안내(20일 이후) · 병역명문가증 발급(말일까지) (다음달, 지방병무청)	· 시상식(본청) · 증서수여식(지방병무청) (매년 5 ~ 6월)

※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는 17개 모든 광역 시·도와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현황 >

○ 5,036가문 / 23,455명

(단위: 가문/명, 2025.7.31. 기준)

구 분	계	'25.7.31.	'24년	'23년	'22년	'21년	'20년~'04년
가문 수	5,036	996	1,225	841	492	239	1,243
병역이행자	23,455	4,500	5,496	3,900	2,245	1,199	6,115

※ 병역명문가 등록 및 현황 관리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실시

<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지원 현황 >

(2025.7.31. 기준)

구분	조례명	우대사항
주차장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제1항 제14호	주차요금 20% 할인
미술관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무료관람) 제1항 제16호	무료관람
박물관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관람료의 면제) 제1항 제16호	관람료 면제
과학관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관람료 감면) 제1항 제8호	관람료 면제
교육 (시설)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 사육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수감료 감면) 제1항 제6호	수감료 감면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 제1항 제3호 제라목	병역명문가 단체 경기·행사 사용 시 50% 감면
문화시설 (신규)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제5조(관람료 면제) *24.5월 조례·규칙심의회 심정 요청, 8.28. 현재 의회 재상정 예정	관람료 면제

[업종별] 서울 소재 병역명문가 주요 예우 현황 (병무청 누리집 분류 기준 근거)				
기타 (공영주차장 주차료)	병원 (보건소 진료비)	교육(학습·프로그램·시설 등 이용료 및 수강료)	스포츠/레저 (사용료)	
18개	17개	21개	26개	
김북, 강서, 관악,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서초, 성북, 송파, 양천, 용산, 종로, 중랑	강남, 관악, 광진,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서대문, 중구, 서초, 성동, 용산, 중랑, 강북, 송파, 종로	강동, 강서, 관악, 광진, 금천, 동작, 서대문, 서초, 양천, 용산, 중랑(이상 평생학습관), 강북(사이버), 성동(구민대학), 금천(마포 성북강남(이상 구민도서관), 강남교육지원센터, 강남여성능력개발센터, 강남인터넷수능강의시설, 관악구자치회관	강남,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2), 동작, 마포, 중구, 서초, 성동, 성북, 양천, 용산, 양평, 영등포(2), 종로, 중랑, 노원	
문화	기타 (돌봄서비스, 시설 이용 등)	궁능원/유적지	기념관 /박물관	숙박
7개	4개	9개	2개	1개
동대문서울한방진흥센터, 국립국악원,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CGV, 롯데시네마(송파), 강남동북합동문화센터	강남구 돌봄시설, 강남구 어린이회관, 강남구주민센터, 노원구자연체험시설	경복궁, 덕수궁, 선릉, 의릉, 종묘, 창경궁, 창덕궁, 태릉, 현릉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호텔가파치노(강남구)

○ 안 제2조제1호는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에 관한 근거 법령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서술하여 규정해 온 “병역명문가” 정의를 개정된 근거 법령**의 해당 조를 직접 인용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현행 본 조례에서는 병역명문가 정의에 여성 현역복무자를 포함하는 개정(2012.11.21.) 사항을 현재까지도 반영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로써, 법 조문을 직접 인용하는 본 개정안을 통해 치유됨.

* 「병역법」(법률 제19791호, 2023.10.31. 일부개정, 2024.5.1. 시행)

** 「병역법」 제8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 본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발췌) >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법」 제8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가문을 말한다.

- 다만, “병역명문가”는 「병역법」 제82조의3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하도록 하고, 법 시행령에 제163조(선정대상), 제163조의2(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제163조의3(포상), 제163조의4(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에 선정대상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 법 시행령의 관련 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볼 여지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관련 법규 >

「병역법」

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 ① 병무청장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가문에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에서 제외하며, 이미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① 법 제82조의3제1항 본문에서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이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1.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일 것
2. 현역복무 중 전사·순직했거나 전상·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일 것
3.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일 것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이거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일 것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일 것

② 법 제82조의3제2항에서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86조·제87조·제87조의2 또는 제88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2.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전역된 사람
3. 「군형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안 제2조제2호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정의 중 ‘병역명문가증’ 발급 조건을 삭제하고, 법령에 따라 선정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하여 예우대상자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 본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발췌)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생략)	제2조(정의) ----- -----. 1. (생략) 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 병무청장의 병역명문가 선정은 공적인 자격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이에 대하여 조례 정의를 통해 병역명문가 예우를 제한(병역명문가증 소지 여부에 따른 예우 제한)하는 것은 법적 정합성 측면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할 것임.
-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서는 병역명문가의 예우 및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24조)하고 있으며 우대 사항으로 기념식 행사 초청(제1항)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시설 이용료, 수강료 등에 대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현행 조례 제5조(우대)에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어 정의에서 병역명문가증 발급 여부를 조건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본 개정의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한편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비상기획관은 예우대상자를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하 "거주지 제한")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는 개정안(안 제2조제2호)에 대하여, 관련 경기도 조례를 예로 들어 예우대상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을 해제하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비상기획관 검토 의견(민방위담당관-12881(2025.8.14.))

- 안 제2조제2호, 예우대상자를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검토 필요
 - 자치구에서는 서울시의 조례를 따라 예우대상자를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함.
 - 이로 인해, 병역명문가가 주소지와 상관없는 이웃 자치구에 주차를 하고자 할 때, 예우대상자로서 받는 20~80% 주차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병역명문가 입장에서 국가에서 인정한 병역명문가임에도 다른 자치구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 대해 불합리함을 호소함. 특히 경기도는 주소지 제한을 두지 않고, 감면 혜택을 주고 있어 불만 가중 ※ 민원 내용 첨부
- 병역명문가 제도는 「병역법」 제8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이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감면혜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안의 문구를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경기도와 동일하게 수정할 것을 제안함
 - 경기도 조례 : “예우대상자”란 주소지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 비상기획관은 현행 조례(서울시)에서 예우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서울시 거주지 제한을 규정함에 따라,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도 이를 준용하여 25개 서울시 자치구 모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해당 자치구에 주민*으로 한정하여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

* 해당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예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생략)

제4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게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생략)

- 이로 인해 국가에서 인정한 병역명문가임에도 거주지 외의 자치구로부터 주차감면 등 예우대상자 지원이 배제되고 있고, 이에 대한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바,

〈병역명문가 청원 사항 요지〉

접수일시		2025-06-09 10:15	처리기간	2025-06-09~2025-09-08
청원사항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청원 제목	공영주차장 병역명문가 할인 주소제약을 없애주세요.			
청원 내용				
병역명문가증으로 공영주차장에서 30프로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참 좋고 병역을 잘 이행했다는 그 뿌듯함이 있는 대요.				
문제가..서울시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특히..같은 구에서 살고 있는 주소지의 사람만 감면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차를 타고 이동해서 주차를 하려하는데 같은 구에 살고있는 사람만 할인해 주는게 무슨 경우인가요?

같은 구 내에서 이동할꺼면 되도록 걸어가겠죠. 보통 차로 이동하면 자기가 살던집에서 구정도는 벗어나는 거리를 이동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제가 3대에 걸쳐 현역으로 병역복무하며 단순히 우리 구만 지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키러 갔고, 나라를 지켰죠.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625때 수류탄을 맞고 의가사 전역하신 후 평생을 수류탄 파편때매 다리 한쪽을 저시며 농사지으신 국가유공자이십니다. 그런 할아버지를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아버지와 저도 현역복무를 했습니다.

성남이나 다른 경기도에선 주소같은건 묻지도 않고 병역명문가증을 이야기하면 바로 할인을 해주는대 반해, 서울에선 유독 공영주차장에선 자기구에 살고있는 사람만 할인해준다며 거부를 하더군요.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https://www.gongdan.go.kr/park/cnts/selectContents.do?cntnts_id=P100000007

예시인 성북구의 공영주차장 할인제도입니다. 성북구에 살고있는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를 요구합니다.

이거 좀 개선해주세요. 단순히 성북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조례로 그렇게 되어있다며 굉장히 많은 구의 공영주차장 할 인이 그런식입니다.

차로 주차를 하려하면 다른 구에 있을 일이 90프로 이상인지라 실제로 주차를 하려고하면 제가 살고 있는 구말고는 서울 내에선 받을수 없는 혜택입니다. 개선부탁드립니다.

- 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본 조례 제2조제2호)을 경기도와 같이 지역제한을 두지 않도록 개정하여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도 지역 제한 요건을 두지 않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임.

<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경과 >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5월 13일, 조성환 의원 등 19명
- 상정일자 : 2025년 6월 26일 상정, 의결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주요 내용(발체)
 - 예우대상자의 범위를 주소지 및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가문의 병역이행자로 확대, 병역명문가의 예우 및 지원이 보다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함.

○ 다만, 비상기획관의 제안 내용과 같이 경기도의 관련 조례 개정 사례에 따라 거주지에 관계 없이 전국에 있는 모든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경우

-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공용주차장 등)에서 시민의 역차별 문제,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무와 복리에 관한 사항만 처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권한 범위 문제, 각 광역자치단체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 볼 때 충분한 논의와 시민 공감대 속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임.
- 또한 전국 단위 공통된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한다면 중앙정부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비상기획관은 개정 의견 제시 전에 지원 대상 예우대상자의 확대에 따른 수반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25개 자치구 의견 수렴*과 자치구 조례 개정 의사 확인 등 사전 필요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본 개정안에 대한 비상기획관의 의견은 자치구 협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자치구 협의 등 필요 사전절차 이행도 없이 본 의원발의 조례안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결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임.

※ 경기도의회 안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병무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통일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에 관계없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를 거친바 있음.

< 중앙정책협의회의 지자체 조례 개정 관련 논의 현황 >

- 행안부 주관 중앙지방정책협의회('25.2.21.) : 조례 개정 협조 요청(병무청)
 - ※ 지자체별 조례 예우대상 범위 현황 : 전국(충청북도) / 지역주민(16개 시·도)
- 2차 도·시·군 부단체장회의('25.2.24.) : 31개 시·군 조례 개정 협조 요청(서면안건)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숙자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935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8월 11일

발 의 자: 이숙자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곽향기, 김영철,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춘선, 서상열,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영희, 이봉준,
이상욱,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전병주, 최민규,
황철규 의원(25명)

1. 제안이유

- 「병역법」 제82조의3에 병역명문가의 선정 요건 및 절차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조례의 병역명문가 정의를 상위법령과 일치 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 또한 예우대상자 요건 중 ‘병역명문가증 발급’ 조건을 삭제하고, 법령에 따라 선정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자를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병역명문가의 정의를 「병역법」 제8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선정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가문으로 정비함(안 제2조제1호)
- 나. 예우대상자 요건에서 ‘병역명문가증 발급’ 요건을 삭제하고,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사람 중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함(안 제2조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병역법」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법」 제8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법」 제8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병역법」 제82조의3에 병역명문가의 선정 요건 및 절차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현행 같은 조례의 병역명문가 정의¹⁾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하여 **법령과 조례간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서울시 재정지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

1) [상위법령 개정에 의한 추가재정소요 영향 검토] 통상 정의규정의 개정은 조례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정의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각종자료 등 검토결과 해당규정은 현행 같은 조례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명시(조건규정→법령에 따라 선정된 사실 자체 규정)하였을뿐 **재정소요 요소** 중 하나인 기존 **예우대상(Q)**의 변경, 증가, 감소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